

제 호

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
([]배아 []체세포복제배아 []단성생식배아)

○ 기 관 명:

○ 소 재 지:

○ 기관장 성명: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29조·제3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질병관리청장

직인

변경사항 등	
연 월 일	내 용